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 다. 이 장에 따라 당사국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제3.2조 원산지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1.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나.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위 다호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 마. 당사국의 육지,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몇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사.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아.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서만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취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상품
- 자. 아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상품
- 차.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카. 위 가호부터 차호까지에서 명시된 상품으로만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1항아호 및 자호의 “당사국의 선박”과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의 법에 합치되게 그 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선

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제3.4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1. 제3.1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¹
2.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상품이 되어, 그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3.5조 최소허용수준

1. 제3.4조제1항 및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3-가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초과되지 않는다.

¹ 상품이 제3.4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국에서 개발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제조 공정으로 간주된다.

2.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모든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공정

나. 포장의 단순한²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²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라.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²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바.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 아. 파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한² 분쇄 또는 단순한²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타.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²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단순한² 시험 또는 측정
- 하.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² 포장 공정
- 거.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²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녀.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³ “단순한 혼합”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더. 동물의 도살, 또는

러. 위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3.7조

자격 단위

1.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상품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조건에 따라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나. 탁송물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상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된다.

제3.8조

화학반응이란 문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⁴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입증하는 목적상, 그 상품의 제조에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고,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3.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그러한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를바 “구분 회계” 기법이 사용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이 기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획득된 상품의 수량과 재고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다면 획득되었을 상품의 수량이 같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6. 이 기법은 상품이 제조된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기록되고 적용된다.
7. 이러한 편의의 수혜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혜자는 그 수량이 관리된 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제공한다.
8. 관세 당국은 승인의 사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그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⁴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3.10조 세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11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상품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공구, 그리고

라.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

제3.12조

영역 원칙

1. 제3.2조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 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 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 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6조에서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하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1)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2) 그러한 작업 또는 가공이 그 재수입된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HS)의 6단위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3)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⁵는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제3항의 규정이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관한 사실 정보가 부속서 3-다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4.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13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례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택송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밖의 영역에서 그 관세 당국의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러한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가.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⁵ 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부가가치”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비용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가 포함된다.
나. 각주 5가호에 기술된 총부가가치는 제3.4조제1항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나.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가.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나.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또는

다. 위의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명할 그 밖의 서류

3.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비당사국으로 반출되고 제3.6조에서 정의된 것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산지 상품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될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허용하는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제3.14조

전시회

1. 한국 또는 이스라엘 외의 비당사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이 협정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운송하고, 그 상품을 그 비당사국에서 전시한 사실

나. 상품이 그 수출자에 의하여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인에게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사실

다.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비당사국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시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2. 원산지 증명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제1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제3.15조

일반 요건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영어로 작성되는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이 협정의 특혜 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속서 3-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 원산지 신고서

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2)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20 조에 따른 수출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3.24조에 명시된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3.16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1.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또는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지칭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신청 또는 종이 형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양식은 수출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작성된다.

4.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되는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경우 발급된다.

6. 발급 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상, 그 발급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장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 를 가진다.

7. 각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특정 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다.
8.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내에 발급된다.

제3.17조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1. 제3.1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하고, 요청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3. 발급 당국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서에 제공되는 정보가 상응하는 파일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검증한 후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부속서 3-다에 기술된 적절한 난에,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되었다는 것이 기재된다.

제3.18조 제2사본 원산지 증명서

1. 종이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 당국에 발급 당국이 보관 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제2사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부속서 3-다에 기술된 적절한 날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2사본이라는 것이 기재된다.
3.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날짜가 기재된 제2사본은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3-라-1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요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 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3.20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제3.15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 수출자 또는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상품의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라-2에 제시된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제3.21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대우의 적용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그 밖의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상품이 제출된 경우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3.22조

원산지 증명의 제출⁶

1.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2. 관세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유효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자국의 법에 규정된 수입 서류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3.23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6부부터 제19부까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상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은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통관 시점 내에 관세 당국에 제출되거나, 제3.22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통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된다. 다만, 통관 시점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되었어야 한다.

제3.24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이나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상품의 총 가치는 소포의 경우 미화 1천 달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의 경우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25조 증빙서류

1.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3.16조제4항 및 제3.20조제2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부기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로서, 이 장에 따라 당사국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마. 제3.12조의 적용에 따라 당사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2. 수출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 위치하는 운영자가 탁송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은 부속서 3-다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다.

제3.26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3.16조제4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3.20조제2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제3.16조제3항에서 언급된 신청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번호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

제3.27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2. 원산지 증명에서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8조

상호 지원

1.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2. 이 장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그리고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제3.29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적절한 경우 검증 요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3.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장부에 대한 모든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5.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해당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6.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의 검증결과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공된다.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그 목적을 위하여,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

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수행된다.
- 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의 방문을 지원하고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수출자의 사업장에 동반한다. 그리고
-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9.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오직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개 될 수 있다.

제3.30조 분쟁해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과 그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 간에 제3.29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이 장의 해석에 대하여 관세 당국 중 하나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그 사안은 이 협정의 제19장(협정의 운영)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된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협정의 제20장(분쟁해결)을 적용한다.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다.

제3.31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의 통제하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그 상품이 제3.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 나. **류, 호 및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구성하는 상품분류 체계에서 사용된 류, 호 및 소호(각각 2단위, 4단위, 그리고 6단위)를 말한다.
- 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및 보험, 포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 라. **분류된**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마.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바. **관세가격**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사.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아. **상품**이란 재료와 생산품 모두를 말한다.

자. **발급 당국**이란 다음을 지칭한다.

1) 한국의 경우,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2)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차. **제조**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카. **재료**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주해

다음의 특정한 이유로 한정하여, 원산지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 없이 특혜대우가 거부될 수 있다.

- 가. 제3.13조의 직접 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나. 원산지 신고서가 한국 또는 이스라엘 외 국가의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되었을 경우
- 다. 제3.15조제1항나호1)목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발급되었을 경우
-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마. 수입자가 수입 신고 당시 적절한 원산지 증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 증명이 그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특혜관세대우가 특정 상품에 적용된 경우⁷
- 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3.29조제7항가호에 따른 서면 요청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 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제3.29조제7항나호에 따른 방문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아.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은

⁷ 이 규정은 한국에만 적용 가능하다.

경우